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1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탈퇴)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호관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박찬우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가합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승계참가인에게 26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371,1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참가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321,130,600원의 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F은 장모인 피고 E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E을 대표자로 내세워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모두 피고 회사에 이전한 후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폐업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채권 추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게 원고들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침해된 원고들의 위 채권액 합계 371,130,600원(= 위 321,130,600원 + 위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9. 5.경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참가인에게 위 371,13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갑 제8, 9,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는 2013. 7. 3. 소외 회사와 김해시 P 지상 공장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¹⁾으로 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14. 1. 29.경 위 공장증축공사를 완료하자 피고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위 401,500,000원을 2014. 2. 1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위 401,5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추가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462,430,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은 원고 회사가 작성한 채권 내역서에 불과하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141,3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정한 실제 공사대금은 290,000,000원이었음에도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된 계약서인 갑 제8호증을 작성하고, 원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위 401,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인 갑 제9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위 2014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60,200,000원(= 위 401,500,000원 - 위

141,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나. 원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참가인은, 원고 B이 소외 회사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50,000,000원 부분의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소외 회사가 2011. 1. 5. H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H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 중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B이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H에게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증거로 갑 제38, 63호증이 제출되었으나, 갑 제38호증은 그 작성자와 작성근거가 불분명하고, 갑 제63호증은 원고 B이 작성한 내용증명 서면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260,2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만이 인정된다.

4. 피고들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 60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피고 F과 I은 부부이고, Q과 피고 E은 I의 부모로서 피고 F의 장인, 장모이다.
- 2) 피고 F은 2009. 10. 27.경 상호 ‘주식회사 G’, 목적 철판가공 제조 및 임가공업 등, 대표이사 피고 F으로 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 3)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24.경 피고 E 명의로 상호 ‘D’, 사업의 종류 제조업, 종목 철판가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와 피고 E 사이에 피고 E이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양수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2014. 4. 7.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가 작성되었다.
- 4) 2014. 10. 22.경 상호 ‘주식회사 D’, 목적 철판가공 제조 및 임가공업 등, 대표이사 피고 E인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본래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위 영업권 및 자산 일체를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 5) 한편, 소외 회사는 위 2014. 4. 7.경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해산간주로 인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9. 27. 청산종결되어 2016. 10.

13.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다.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 E은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을 상실시켜 그 채권자인 원고 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14, 30, 32, 62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침해에 관하여 피고 F, E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의 채무 면탈에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사정에 관하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소외 회사의 영업과 자산이 피고 회사에 이전될 무렵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폐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도 원고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할 뿐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폐업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의 거래처, 직원, 설비 및 부동산이 그대로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고3),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 영업을 폐지된 점, ③ 법인등기부 상 소외 회사의 목적은 ‘철판가공제조 및 임가공업’, ‘철판 도소매업’, ‘플라스틱 창호제조 및 도소매업’, ‘반도체 부품제조’,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피고 회사의 목적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④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2009. 11.경부터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4. 10.경까지의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까지도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소개되어 있고, 신문기사에서도 소외 회사의 성과가 피고 회사의 성과로 소개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 F은 피고 회사 설립 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 피고 회사의 영업과 소외 회사의 영업 사이에 연속성도 인정되는 점, ⑤ 피고 F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저와 직원들은 현재의 공장에서 열심히 가동하고 있기에 원고 B의 공사대금을 갚을 생각이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는데, 설령 피고 E이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가치를 피고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과 동일한 금액 상당으로 정하게 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서 여전히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이전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F, E이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회사의營業을 폐지하면서 그 영업 및 자산 일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명백하게 해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변제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소외 회사의 영업, 자산의 이전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E이 소외 회사에 412,700,000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E은 위 투자금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양수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E 명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가 위 412,7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피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E이 소외 회사에게 투자한 돈의 내역을 정리하고 그 증거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4), 피고 E이 제출한 위 투자금 내역에는 피고 E이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이체한 투자금이 2009. 7. 3.자 5,000,000원, 2009. 11. 12.자 20,000,000원, 2010. 10. 1.자 19,700,000원 합계 44,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 E 명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는 위 각 돈 중 2009. 7. 3.자 5,000,000원, 2010. 10. 1.자 19,700,000원 합계 24,700,000원 뿐이다), 피고 E 명의 계좌에서 Q 또는 피고 F 명의 계좌로 돈이 추가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그 돈이 피고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F, E, 소외 회사, Q 명의의 각 계좌 사이에서 수백 회에 걸쳐 수시로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고, 그 중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도 221,354,888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갑 제32호증 참조), 피고 F은 소외 회사를 운영할 당시부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예금거래 등에 아내인 I과 장인인 Q 명의를 사용한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의 장모인 피고 E의 위 계좌 또한 피고 F이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용한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가 더 많은데도 피고 E 명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만을 두고 이를 피고 E의 채권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E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면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 E이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자가 누구인지, 주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청하였으나6) ,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피고 F, E이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적극 공모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2017. 12. 1. 수사기관에서, 피고 F은 ‘원고 B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자산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 E에게 소외 회사의 자산을 양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7) , 피고 E은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 회사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 .

그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강제집행 등으로 소외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소외 회사의营业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피고 F, E이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일체를 피고 E 명의의 D 및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9) . 위와 같은 피고 F,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에 피고 E은 피고 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영업인 철판가공제조 및 임가공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고 F과 E은 원고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과 자산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 F, E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등에 관하여

원고 B이 피고 F, E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2018. 2. 27. 피고 F,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외 회사의 피고 E에 대한 허위의 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피고 F, E에게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내려진 수사기관의 형사처분으로서, 피고들의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한 위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 거래처 등이 소외 회사와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다른 회사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그대로 인수한 이상 그 후에 있는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자산 변동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피고들은 을 제2 내지 5호증, 제1심법원의 R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9. 11. 12.자) 등을 근거로 피고 F이 아닌 피고 E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은 피고 회사의 운영에 피고 E의 명의를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일 뿐 피고 E이 실제로 피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F, E은 위법하게 원고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위 260,200,000원¹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는 2019. 5. 16.경 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참가인에게 위 26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일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멸시효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는 2014년경 피고 F 및 Q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소는 위 2014년경으로부터 3년이 도과된 2019. 1. 2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가 피고 F 및 Q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위 2014년경 고소사건은 ‘소외 회사의 자산을 주식회사 L에 허위양도 하여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을 피고 회사에 이전한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와 다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위 2014년경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는 2017. 9.경에서야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조미화, 판사 김윤석

1) 공사계약서에는 그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6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을 제11호증 제56~57면 참조.

3) 피고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매출처 및 직원도 이를 그대로 피고 E이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제37면 참조).

4) 을 제11호증 제44~55면 참조.

5) 피고들 2020. 2. 3.자 준비서면 제3면, 갑 제2호증의 1, 을 제11호증 제26, 28면, 참조.

6) 2019. 12. 3.자 준비서면 제8면 참조.

7) 을 제12호증 제38면 참조.

8) 을 제11호증 제27면 참조.

9) 피고들 2019. 9. 4.자 준비서면 제4면 참조.

10) 참가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전부라고 주장하는바, ① 갑 제18, 35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소외 회사의 2012년 당시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및 피고 회사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산,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그 영업 및 자산을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회사의 채권을 변제할 자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 회사가 취득한 소외 회사의 영업 및 자산 가치는 20억 원을 초과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 전부인 위 260,2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